

부산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5857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1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 C, D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55,631,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9. 17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,504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주은영

별지